

[일련번호 : 26]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3항 및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할 장애인에 대하여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장애 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여 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재판정 기한일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제2장 장애인등록제도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전산 송신으로 장애정도심사를 의뢰하고, 이후 공단에서 통보된 장애심사 결정내용을 확인하여 장애인 등록 후 공문에 장애인 정도 결정서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장애인 등록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5명에 대하여 재판정 통보 또는 촉구를 누락하거나 최대 23일 지연하여 처리, 재판정 기한까지 서류제출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취소 사전통지 등 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장애인 재판정 통보 및 촉구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재판정 기한	통보·촉구 내역		재판정 일자	부적정 내역
				통보일자	촉구일자		
1			220616	220311	220531	22.06.30.	촉구지연12일
2			220811	3개월전	220801	22.08.31.	촉구지연18일
3			230521	3개월전	-	23.06.15.	촉구누락
4			241130	240826	-	24.12.04.	촉구누락
5			240722	240415	240625	미실시	취소절차 미안내
6			240406	240129	-	미실시	통보지연23일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는 재판정일이 2024-11-30로 재진단기한일 2024-10-30로 재판정 통보를 하였음. 이후 유선으로 보호자가 기한일보다 일주일 정도 뒤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의사표현하였고, 재판정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기에 촉구서 통보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의 요청이 있어 상담대로 2024-11-04 서류를 제출하여 진단서 접수하고 공단으로 전송하여 재판정을 잘 이행하였기에 관리 소홀로 볼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관련 지침에 '3개월 전 통보 → 1개월 전 촉구 → 미제출 시 취소 사전통지'의 단계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절차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재판정 기한을 인지하고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행정청은

향후 의무 미이행 시 후속 절차(취소 사전통지 등)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동은 ***(***)은 재판정일이 2024-07-22로 재판정 추구를 2024-06-25 실시 하였으나 재판정 기한까지 이행을 하지 않은 대상으로 취소절차 안내를 위하여 확인 시 2024-08-30 사망자로 분류되어 취소 절차 안내를 생략한 대상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24.8.30.사망자일지라도 2024.7.22.기한 내 재판정 서류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 등의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므로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